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32
----------	------

제출연월일 : 2020년 4월 3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인터넷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시민들의 서울교육참여 유도 및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활용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SNS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까지도 포함하는 ‘인터넷 매체’ 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제명)
- 나. 조례의 목적을 홈페이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 것에서 홈페이지를 포함한 인터넷 매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함(안 제1조)
- 다. “인터넷 매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다른 정의들도 개정에 맞도록 정비함. (안 제2조)
- 라. 운영 활성화 대상을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매체로 확대함 (안 제1조, 안 제3조 ~제5조, 안 제7조, 안 제10조)

다. 미사용 용어, 어색한 표현, 띄어쓰기 등을 재정비함.(안 제1조 ~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별첨 5]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의: 대변인, 감사관, 정책안전기획관, 예산담당관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1]

2) 입법예고(2019. 9. 16. ~ 10. 6.)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별첨 3]

5)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별첨 4]

6) 공직선거법 질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답변서[별첨 6]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서울교육정책 참여 유도과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 매체”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본청 및 「교육자치법」 제32조,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운영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매체를 말한다.

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공간

나. 스마트폰 기반의 앱

다. 블로그, SNS 등 소셜 미디어 서비스

3. “이용자”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따라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5.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6. “정책메일서비스”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인터넷 매체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 기관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정책 및 업무 추진 현황 등의 행정 정보
2. 전자민원창구 운영
3. 시민의 교육정책 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4. 국내외 홍보 및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정보

②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 매체 정보 관리) ①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에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터넷 매체 정보 관리에 대하여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 관리 우수기관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인터넷 매체 게시물 관리)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인터넷 매체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동일한 내용이나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도배성의 글을 올리는 경우
9. 연습성, 장난성의 글인 경우
10. 그 밖에 해당 인터넷 매체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

제6조(인터넷 의견 교환 창구의 운영) 교육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교육정책 참여 유도 및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인터넷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①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 이용자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 또는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터넷 매체에 이용자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정책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액수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기간 전에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기관의 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 또는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별표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된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교통카드
2. 모바일서비스
3. 도서문화상품권

4.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누적 마일리지의 사용에는 유효기한을 두되, 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③ 기관의 장은 마일리지의 사용 방법 및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메일서비스 제공 및 설문 조사) ① 교육감은 수신 동의한 이용자에게 교육정책 및 다양한 교육 정보를 메일 서비스로 제공하여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고, 문제점을 발굴·개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마일리지 부여기준 (제8조 관련)

구 분	대 상	부 여 점 수	부여 방법
1. 회원 가입	홈페이지 회원 신규 가입자	500점	최초 가입 시 1회
2. 로그인	홈페이지 방문자	10점	1일 1회
3. 개인정보 수정	홈페이지 개인 정보를 수정한 자	10점	연 1회
4. 뉴스레터 열람	뉴스레터 열람자	10점	이메일에서 열람 때만 인정
5. 설문조사 참여	설문조사 참여자	100점	회당 1회
6. 글·사진 및 동영상의 게시	글·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한 자(게시물은 직접 교육정책 참여와 관련된 것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것)	50점 이상 500점 이하	게시물별로 각각 승인처리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해당 게시물 운영 홈페이지에서 1인 1일당 1건의 게시물에 한정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주 : 위 점수의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별첨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이 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하고 시민의 교육정책 참여를 유 도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 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서 울교육정책 참여 유도과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홈페이지(외국어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신 설>

3. “이용자”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삭 제>

2. “인터넷 매체”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본청 및 「교육자치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운영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매체를 말한다.

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공간

나. 스마트폰 기반의 앱

다. 블로그, SNS 등 소셜 미디어 서비스

3. “이용자”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따라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5.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6. “정책고객”이란 PCRM(정책고객관계관리: 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서비스에 대한 수신 동의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한 고객을 말한다.

7. “정책메일서비스”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5. ----- 인터넷 민원

-.

<삭 제>

6. (현행과 같음)

제3조(홈페이지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정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전자민원 창구 운영
3. 시민의 교육정책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4. 국내·외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홍보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정보

② 기관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제3조(인터넷 매체의 운영) ① ---

----- “기관의 장” -----
-- 인터넷 매체 -----

-----.

1. 주요 정책 및 업무 추진 현황 등의 행정 정보
2. 전자민원창구 -----
3. --- 교육정책 참여 -----

4. 국내외 홍보 및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②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의 외부 전문기관 -----
-----.

③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를 --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외부 자문 -----

-----.

제4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기관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 매체 정보 관리) ①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에 ---

-----.

② 기관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담당부서를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에 ---
-- 게시하는 경우 -----

-----.

③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홈페이지 정보 관리에 대하여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기관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
----- 인터넷 매체 정보 관리에 -----
----- 정보 관리 -----
-----.

제5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기관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

제5조(인터넷 매체 게시물 관리)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의 ---
----- 인터넷 매체

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특정 기관, 단체, 부서-----

4. (현행과 같음)
5. 영리 목적 -----

6. ----- 내
용인 경우
7. (현행과 같음)
8. ----- 사람이
동일한 내용이나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도배성의 글을 올리는
경우

9. 연습성, 장난성의 글

10. 그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6조(열린 교육감실 나도 교육감 운영) 교육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교육정책 참여유도와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인터넷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열린 교육감실 나도 교육감”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기관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 또는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9. ----- 글인 경우

10. 그 밖에 해당 인터넷 매체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

제6조(인터넷 의견 교환 창구의 운영) -----
----- 교육정책 참여 유도 -----

별도의 -----
-----.

제7조(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①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 이용자의 -----
----- 인터넷 매체에 이용자 참여 행사를 -----.

1. 주요 정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4. 그밖에 교육정책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액수 그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기관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 또는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② 기관의 장 -----

-----.

③ 기관의 장 -----

----- 행사
기간 전에 인터넷 매체를 -----
-----.

제8조(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기관의 장 -----

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별표에 의거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된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교통카드
2. 모바일서비스
3. 도서문화상품권
4.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누적 마일리지의 사용에 대하여는 유효기한을 두되, 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③ 기관장은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메일서비스 제공 및 설문조사) ① 교육감은 정책고객에

-- 별표에 따라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
---- 사용에는 -----

-----.

③ 기관의 장은 마일리지의 사용 방법 -----

-----.

제9조(정책메일서비스 제공 및 설문 조사) ① ----- 수신 동의한

계 교육정책 및 다양한 교육정보를 메일서비스로 제공하여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한다.

② 정책메일서비스 발송은 수신 동의한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고객만족도를 측정하고, 문제점을 발굴·개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용자에게 -----
-- 메일 서비스----- 교육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삭 제>

② ----- 설문 조사 -----
- 고객 만족도-----
-----.

제10조 (시행규칙) -----

-- 인터넷 매체 운영 -----
-----.

【별첨 2】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7조 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수단이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매체로 개정 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이용자 참여 행사가 운영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15,600천원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 이용자 참여행사 시 참여자 경품 지급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10,000\text{원} \times 10\text{명} \times 52\text{회}^* \times 3\text{매체} = 15,600,000\text{원}$$

(* 연 매주 참여행사 운영을 가정)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대변인 주무관 박상미(02-3999-047)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주무관 이해범(02-3999-729)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평가담당	감사관	행정6급	박동환
입안주관부서	행정관리담당관	통보일	2019. 10. 1.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1조~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맞춰 홈페이지 외에 블로그, SNS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과 교육 정책에의 시민 참여 유도가 점점 더 필요해짐에 따라 인터넷 운영 활성화의 대상을 홈페이지에서 블로그, SNS 등을 망라하는 인터넷 매체로 확대하고 관련 규정 내용을 정비하는 등 -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견 수렴, 정책결정과정,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 접근의 용이성이 확보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p style="margin-top: 10px;">⇒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함</p>		“원안동의”

【별첨 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19A서울교육021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명	이해범	전화번호	02-399-9729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정책안전기획관		
	담당자명	민경식	전화번호	02-399-9310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19년 09월 19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19년 10월 01일			
<p>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10월 01일</p>				

관계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 차. (생략)

5. ~ 6.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⑤ (생략)

【별첨 6】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답변서

【문】 다음 조례안 제7조에 근거하여 SNS와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이용자 참여 행사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 중 하나로 열거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관련 조례

-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중이며,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와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동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정의)제2호 및 제7조(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인터넷 매체”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매체를 말한다.
 - 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공간
 - 나. 스마트폰 기반의 앱
 - 다. 블로그, SNS 등 소셜 미디어 서비스

제7조(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① 기관장은 인터넷 매체 이용자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 또는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터넷 매체에 이용자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정책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액수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기간 전에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2019. 9. 30. 서울특별시교육감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이용자 참여 행사를 진행하면서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개정 조례」의 범위 안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해당되어 가능할 것입니다.

(2019. 10. 7.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